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12월 18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12월 22일

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천 동 성

나. 제안이유

- 2001. 1. 27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석유 판매소의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
- 2001. 1. 17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정 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제출된 주민의견의 검토 및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 주민의견 반영여부 투명성 제고(제10조)
- 주민의견 청취시 주민이 제안한 경우 도시계획입안 사실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(제12조)

-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람 공고를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의 내용을 변경(제13조)
- 도시계획 입안시 행위제한 기산점을 명백히 하고 결정과 요청을 구분(제14조)
-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의 내용과 일치되게 20분의 1을 100분의 10으로 수정(제20조)
-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를 농지안으로 규정(제22조)
- 녹지지역안에서 경사도 25도를 기준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자연경관 및 산림환경훼손이 우려되어 경사도를 30%로 하여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전 및 산림훼손 방지(제30조)
-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높이의 표고 200미터를 100미터로 하고 도로 등과 접속시 150미터 미만까지 허용. 자연경관 훼손방지(제30조)
- 비탈면 또는 절개지에서 지하수 발생시 적절한 배수처리 공법 강구토록 하여 재난방지(제32조)
- 급. 배수관의 매설깊이를 1미터로 하여 동파 등에 대비(제36, 37조)
-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 일반주거지역에 석유판매소의 설치를 허용(제40조 제3, 4, 5호 관련 별표3, 4, 5호)
- 미관지구내 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선에서 2미터 이상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하여 기존의 규제지역과 형평성 유지 및 도시미관 유지(제48조)
-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공연장의 연예장, 음악당의 건축 허용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성 확보와 입지여건을 부합되게 조정(제56조)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, 도시건설국장, 시의회의원 2인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되도록 함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배치되므로 삭제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도시계획담당국장, 교육청 학교담당과장으로 함(제56조)
-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 도시계획을 주민 등이 제안한 경우 제안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, 배경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청취(제68조)
-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며 회의결과의 요약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시 발언내용의 공개로 사회적 물의를 예방함과 아울러 회의내용은 공개함으로써 회의결과의 투명성 확보(제68조)
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위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구성에서 위촉직으로 전환 구성 가능성의 현실화(제71조)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구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수당지급의 근거 마련(제73조)
-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 폐지(부칙 제2조)

라. 참고사항

-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완 진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01.1.17 제정 공포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내용 등을 수정 보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취지로서,
-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 참여도와 투명성 제고, 도시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토지의 경사도 및 표고 기준의 강화,
-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석유판매소 설치 허용,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임.
- 개정내용 중에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환경 친화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기능을 도모해야 하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